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0일, 송재봉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7.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8.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9.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재봉의원)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미해당)되어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최근 청소년이 도박중독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의 경마장, 경륜·경정 경주장 및 사행 행위영업의 경우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는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카지노업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2024년 현재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는 18곳으로, 이들에 대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영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도록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의 경마장, 경륜·경정 경주장 및 사행행위영업의 경우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는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지노업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안 제9조), 기존에 운영 중이던 시설에 대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부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1호”를 “제32호”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u>제31호</u> 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 ----- ----- ----- ----- ----- -----. ----- ----- ----- ----- <u>제32호</u> ----- <u>2호</u> ----- ----- ----- ----- ----- ----- ----- -----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31. (생략) <u><신설></u>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31. (현행과 같음)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카지노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 -. 1. ~ 31. (개정안과 같음) 32. (개정안과 같 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의 금지시 설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 당 시 교육환경보호구 역에 이미 설치·운 영 중인 「관광진 흥법」 제3조제1 항제5호에 따른 카 지노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2호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1호”를 “제3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 ----- ----- ----- ----- ----- -----제32호----- ----- ----- ----- ----- ----- ----- ----- ----- ----- -----.
1. ~ 31. (생략)	1. ~ 31. (현행과 같음)
<신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